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개정규정 설명

- 2025년 12월 30일 개정 -

조달청 구매총괄과

INDEX

다수공급자계약

0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개요
02. 개정 주요내용 조달가격합리화
03. 개정 주요내용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기업지원
04. 개정 주요내용 MAS 제도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개선
05. 기타 규정보완
06. ('25.6.) MAS 개정사항

01. 제도 개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 01)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란?
- 02)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순서

다수공급자계약

MAS | Multiple Awards Schedule

-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
-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
- 최소 2인 이상(원칙 3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단가계약 체결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직접 구매)

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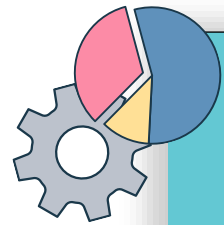
- 상용화 및 경쟁성
 -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신기술제품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
- 규격 및 시험기준
 -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기준 존재

➔ (법적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같은 법률 시행령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01)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란?

운영 현황(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통계)

(단위 :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5.11월
품목수 (개)	444,479	557,499	649,416	722,817	751,873	874,553	953,027
공급금액 (억원)	106,836	147,240	157,183	177,314	183,662	186,054	167,288
업체수 (개)	8,289	9,348	10,352	11,042	11,467	12,471	13,161

02)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순서



02. 개정 내용

조달가격합리화

- 01) MAS 가격관리 강화 등을 통한 조달가격 합리화
- 02)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개선
- 03) 가격탄력성 강화
- 04) 사회적 연대 경제조직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강화
- 05) MAS 신규수요물자 추진 및 물품 퇴출 등 심의 강화

01) MAS 가격관리 강화 등을 통한 조달가격 합리화(26.1.5.시행)

개정 이유

- 협상기준가격 결정 시 규격별 거래내역 없이도 업체제시가격 등으로 가격결정을 하고 있어 품목별 고가계약 우려
 - 업체가 민간 유통 규격과 다른 조달용 규격을 만들어 등록함으로써 적정 가격 산정 곤란, 우대가격유지의무 회피 등 악용 가능
- ➔ MAS 가격의 합리적 산정 및 가격관리 강화 등을 위해 협상품목 선정 기준, 협상기준가격 산정 기준 강화 필요

개정 내용

- (협상대상품목 선정 강화) 업체별 세부품명 기준 거래실례가격이 3건 이상, 품목별 거래실례가격 1건 이상인 경우 가격협상 대상품목으로 선정
- (협상기준가격 작성 강화) 거래실례가는 동종업체, 특수관계인, MAS 계약업체, 제3자단가계약업체간 거래 불인정
- (시중거래규격 일치) 민간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용품의 경우 조달용 규격 등록을 인정하지 않고, 민간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규격만 허용
 - MAS 계약 시 규격별 거래실례 외에 민간 쇼핑몰 등록 여부, 민수 시장 납품 실적 등 민간에서 유통되는지 확인
- ※ MAS 세부품명별 차기구매입찰공고시 반영 예정

개정 이유

- MAS가격이 가장 우대된 가격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되는 다수공급자계약 상품은 계약기간동안 조달가격을 시장가격(민수+관수)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의무
- (제외) MAS가격보다 수요기관 또는 시장에 공급한 가격이 낮더라도 할인행사 가격보다 같거나 높은 경우, 2단계경쟁을 통한 공급의 경우 우대가격 유지의무대상에서 제외

➡ 지방정부 단가계약 구매 자율화에 맞추어 유지의무 위반 개선 필요

개정 내용

- (완화) 업체가 MAS 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 단가 대비 일정범위 (100분의 3)이내에서 계약체결(단가 또는 총액)한 경우에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
 -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급한 경우에도 제외 (규정 현행화)

03) 가격탄력성 강화(26.7.1.시행)

개정 이유

- MAS 할인행사 시 업체요청에 따라 1년에 3회, 7일~15일간 가능
→ 계약담당공무원 승인 필요
-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업체 여건에 따라 가격인하 필요시
가격조정 탄력성 부족으로 적기 인하 곤란

개정 내용

- MAS 계약단가 이하에서 계약상대자가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횟수, 기간 등을 제한하고 있는 **할인행사를 전면 자율화**

구분	현행	개선
할인행사 횟수	1년 3회	폐지
할인행사 기간	7일 ~ 15일	폐지
계약담당공무원 승인여부	승인	폐지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가격은 당일 자정 이후 반영

04) 사회적 연대 경제조직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강화(‘26.7.1.시행)

➔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평가 시 약자지원대상 기업에 **자활기업, 마을기업** 추가

개정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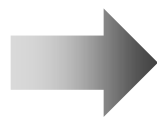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창업기업 소기업 · 소상공인	배점 × 0.7
	여성기업	배점 × 0.6
	해당없음	배점 × 0.4

개정 후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창업기업 소기업 · 소상공인	배점 × 0.7
	여성기업	배점 × 0.6
	해당없음	배점 × 0.4

05) MAS 신규수요물자 추진 및 물품 퇴출 등 심의 공정성 강화(‘26.1.5.시행)

02. 개정 내용
조달가격합리화



MAS 신규수요물자 추진 여부 결정 등을 위한 구매업무심의회 심의 시 **위원장(국장)이 지정한 외부위원(3인 이내) 참여 의무화**

개정 전

제4조(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물자를 다수공급자계약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대상 수요물자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후

제4조(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물자를 다수공급자계약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대상 수요물자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 심의 시 위원장은 3인 이내의 외부위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03. 개정 내용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기업지원

- 01) 규격변경유연화
- 02) MAS 현장설치도 계약에서 사후정산 도입
- 03)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가점부여
- 04) 다수공급자계약 교육수강 의무 완화
- 05)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포장 방법 의무 개선
- 06) 조합의 인증정보 등 변동사항 통보 개선
- 07) MAS 사전심사 재신청 제한 기간 개선
- 08) MAS 2단계경쟁 시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우대

01) MAS 규격 변경 유연화(‘26.1.5.시행)

개정 이유

- 다수공급자계약 제품 납품 시 규격변경은 계약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현장특성, 안전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 → 계약의 안정성, 형평성을 위해 엄격히 제한 중
- 수요기관이 MAS제품 규격을 잘못 선택하여 납품요구 한 경우 규격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납품요구 취소 후 업체 재선정 → 수요기관의 사업차질 발생
- 계약상대자는 귀책이 없음에도 납품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개정 내용

- 수요기관이 규격을 잘못 선택하여 납품요구를 한 경우, 서면 합의 하에 규격변경 후 납품 허용
 - 이 경우 수요목적달성을 위해 계약규격의 외형 및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 허용
 - 변경규격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허용

개정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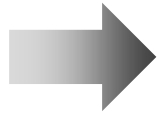
-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설치 시 수요기관 요구에 따라 추가 설치비용을 투입하여 제품을 설치했으나, 적정 금액을 정산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 유발

■ (사후 미정산 사례) 수요기관이 제품설치와 관련 없는 토공사, 터파기 등을 설치업체에 요구하고 관련비용은 정산하지 않음

개정 내용

- MAS계약 시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 계약은 계약서 또는 지방서에 설치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 수요기관 사업목적 및 시급성, 현장여건 등으로 계약서에 정한 설치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경우 실제설치 비용을 사후정산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신설

03)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가점 부여 ('26.7.1.시행)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유도 등 관련 정책지원을 위해 **부품 국산화 기업에 대한 MAS 신인도 가점 신설**

개정 전

신인도 (-1.75~ +2.5)	—(일부생략)		
	기술 및 품질	<고도기술>	1.5
		<일반기술>	1

개정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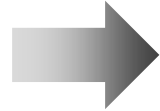
신인도 (-1.75~ +2.5)	—(일부생략)		
	< 부품 국산화 >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1.0
	기술 및 품질	<고도기술>	1.5
<일반기술>		1	

파. 부품 국산화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점
부품국산화	부품국산화 중소기업 으로 확인된 경우	1.0

- 1)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 2)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04) 다수공급자계약 교육수강 의무 완화(‘26.7.1.시행)



교육 의무는 유지하되 **교육완료 시점을 계약체결 시까지 완화**

개정 전

제8조(적격성 평가 및 규격서 제출 요구) ① ~ ⑥ (생략)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후

제8조(적격성 평가 및 규격서 제출 요구) ① ~ ⑥ (생략)
⑦ **삭제**

제20조(계약체결) ① ~ ③ (생략)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05)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포장 방법 개선(‘26.1.5.시행)

➔ 제품 포장 시 재활용은 가능하도록 하되, 포장방법은 업체 자율적으로 하도록 **포장방법 조문 삭제**

개정 전

제30조(포장)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수요물자의 포장을 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개정 후

제30조(포장)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수요물자의 포장을 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06) 조합의 인증정보 등 변동사항 통보 개선(‘26.1.5.시행)

개정 이유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인증 정보 변경 시 7일 이내에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합은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
- 인증정보 변경 시 계약상대자가 업체 또는 조합여부에 따라 통보기간을 달리 규정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

개정 내용

-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도 업체와 동일하게 **인증정보 통보기한(7일)**을 규정하여 **일관성 있는 계약절차 진행**

현 행	개 정(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조합일 때에는 해당 조합으로 하여금 제25조제5항에 따라 조합원사가 조합을 탈퇴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조합일 때에는 해당 조합으로 하여금 제25조제5항에 따라 조합원사가 조합을 탈퇴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07) 사전심사 재신청 제한 기간 개선('26.7.1.시행)

개정 이유

- MAS사전 심사 시 업체가 사전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심사결과 통지 후 90일 이후 사전심사 신청 가능
- 사전심사 재신청 제한 기간 90일 제한 규정은 업체에 과도한 규정으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제한

개정 내용

- 중소기업의 신속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재신청 제한기간을 당초 90일에서 **60일로 축소**

08) MAS 2단계경쟁 시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우대(‘26.1.5.시행)

개정 이유

- 신인도 정비방안에 따라 MAS 2단계경쟁 신인도 평가 항목 중 ‘정규직전환 우수기업’ 폐지(‘25.6.) → ‘26. 1.부터 시행 예정
* (사유) 고용부 예산사정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이 중단
- 고용부는 국정과제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 추진 중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 재개 예정(‘26~)

개정 내용

- 폐지시행예정(‘26.1.1.)인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에 대해 고용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 재개에 따라 **폐지대상에서 제외**

04. 개정 내용

MAS제도 합리적 운영 개선

- 01) MAS 2단계경쟁 가격평가기준 개선
- 02) MAS 2단계경쟁 기술인증 평가 개선
- 03) MAS 2단계경쟁 선택평가항목 형평성 및 합리성 제고
- 04) MAS 2단계경쟁 제안공고 개선
- 05) MAS 2단계경쟁 시 지역업체 평가기준 개선
- 06) MAS 중간점검에 따른 판매중지 사유 신설
- 07) MAS 2단계경쟁 기준 예외적 운영을 위한 기준 신설
- 08) MAS 2단계경쟁 시 납기지체율 평가기준 개선
- 09) 신규 수요물자 MAS 계약 추진 불가 사유 신설
- 10) MAS 부적합물품 퇴출, 타 계약방법 전환 등 규정 신설
- 11) MAS 계약 시 가격자료 제출 서류 현행화
- 12) MAS 계약이행실적평가 전면 개선

01) MAS 2단계경쟁 가격평가 기준 개선 (26.7.1.시행)

개정 이유

- MAS 2단계경쟁 가격평가 시 제안가격이 낮은자(별표5, A형)를 납품대상자로 선정하거나, 제안율이 낮은자(별표5, B형)를 대상으로 선정
- 제안율(B형) 평가 시 업체는 2단계경쟁 시 제안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MAS계약 시 의도적으로 가격을 부풀려 체결



이 경우 동등이상 규격내에서 수요기관은 고가구매 우려

개정 내용

- MAS 가격평가 시 제안율 [별표5] 'B형' 평가를 혼합평가(제안율+제안가격)로 개선

평가지표	평가 기준	평 점
제안가격의 적정성	제안율 및 제안가격	배 점 $\times [0.95 \times \{1 - 2 \times (\text{제안율} / \text{평균제안율} - 95/100)\} + 0.05 \times \{1 - 2 \times (\text{제안가격} / \text{제안평균가격} - 95/100)\}]$

※ 지나친 가격경쟁 완화 등을 위해 제안율 95%, 제안가격 5%로 평가

02) MAS 2단계경쟁 '기술인증' 평가 개선 ('26.7.1.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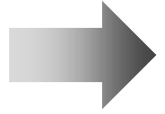
개정 이유

- MAS 2단계경쟁 신인도 평가 항목으로 '기술인증' 평가 中→ 인증종류별로 고도기술(+1.5), 일반기술(+1.0) 구분하여 평가
- MAS품목 중 제품특성상 기술인증 평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입찰참가자격으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가점을 부여하여 평가 형평성에 문제

개정 내용

- 기술인증 평가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제품특성상 수요기관에서 **업체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규격을 정하여 기술 및 품질인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상 기술 및 품질인증을 요구한 경우**

03) 2단계경쟁 선택평가항목 형평성 및 합리성 제고 ('26.1.5.시행)



다른 약자지원 대상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여성기업, 창업기업의 수기평가 예외적용 조문 삭제

개정 전

- 1) 약자지원 평가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여성기업에 대한 평가는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가격제안 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 2) 창업기업은 사업개시일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창업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정보망에서 기업 확인이 되지 않을 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후

- 1) 약자지원 평가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삭제)
- 2) 창업기업은 사업개시일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창업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를 기준으로 (삭제) 한다.

04) MAS 2단계경쟁 제안공고 개선('26.7.1.시행)

개정 이유

- MAS 2단계경쟁 시 수요기관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제안공고 중
 - 2단계경쟁에 따른 가격평가 시 중기간 경쟁물품은 계약가격 기준 90% 미만 제안 불가 → 일반경쟁물품은 하한을 없음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일부제품은 용도, 기능으로 분류되어 나라장터 2단계경쟁 시 가격제안서 제어 및 업체 가격제안서 제출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수요기관 2단계경쟁 제안공고 시 중기간 경쟁제품 표시 필요
(예) 금속기둥: CCTV설치용 → 중기간 경쟁물품, 그 외용도: 일반제품

개정 내용

- 수요기관이 2단계 제안공고 시 중기간경쟁제품 여부 확인 후 제안공고문에 명시 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별지 제10호 서식)

세부품명	구매희망규격	구매예정 수량	납품지역 (시.군.구까지 표기)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예시)액정모니터	크기 58~62cm	400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제품

05) MAS 2단계경쟁 시 지역업체 평가기준 개선('26.7.1.시행)

개정 이유

- MAS 2단계경쟁 시 종합평가방식 선택 평가항목으로 지역업체 평가 중
 - 지역업체 여부는 그 본점 내지 본사가 납품지 소재지(광역자치단체)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
- 2단계 경쟁 시 타 평가항목은 평가기준일(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명시되어 있으나,
 - 지역업체 평가의 경우 평가기준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일부 업체는 제안요청 이후 또는 제안공고 후 해당 가점 취득을 위해 본사를 일시적으로 이전하는 부작용 발생

개정 내용

- MAS 2단계경쟁 지역업체 평가 시 업체가 가점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본사를 이전하지 않도록 지역평가 기준일 신설
 - 평가기준일은 제안요청의 경우 제안요청일, 제안공고의 경우 제안공고일
 - 업체는 납품대상자 선정 후 수요기관 납품요구 시까지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 조건 위반 시 납품요구 취소 가능

06) MAS 중간점검에 따른 판매중지 사유 신설 ('26.7.1.시행)

개정 이유

- 계약상대자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에 따라 구매입찰공고에 정해진 기간에 중간점검 신청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동 규정 제15조에 따라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해당 계약을 거래정지 하여야 함

- 중간점검 미신청자에 대한 거래정지 시 행정절차(의견제출 서면통지 후 처분)로 인해 거래정지 처분(약 10~20일 소요) 전까지 해당업체는 제품 판매가 가능하여 즉시 판매 중지 필요

개정 내용

- 중간점검 미신청 업체에 대한 거래정지 전 판매중지 절차를 신설하여 사후조치 강화
- 중간점검기간(3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중간점검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는 즉시 판매중지(1개월)

07) MAS 2단계경쟁 대상 예외적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26.1.5.시행)

개정 이유

- 수요기관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중기간경쟁제품^{1억원 이상}, 일반제품^{5천만원 이상}인 경우 2단계경쟁을 통해 업체 선정

* 수요기관 구매계획에 따라 통합구매가 가능한 예산, 다수세부품명 품목 구매 시 각 물품별 금액 모두 포함

-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은
수요기관별 예산과목^{국가·세목, 지방정부·통계목} 기준으로 산정

- 제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2단계경쟁 적용기준을 달리 운영*할 필요 → 관련 근거규정 마련 필요

* 중기간경쟁물품, 일반물품 2단계 경쟁 분리 적용 등

개정 내용

- MAS 규정 상 2단계경쟁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제49조(2단계경쟁 대상) ① ~ ③ (생략)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물품의 특성, 단가 등을 고려하여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세부품명별 2단계경쟁 기준금액 등 2단계경쟁대상 기준을 달리 정하여 나라장터에 공고할 수 있다.

08) MAS 2단계경쟁 시 납기지체율 평가기준 개선 ('26.7.1.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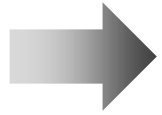
개정 이유

- MAS 2단계경쟁 시 적기납품 평가에 따른 납기지체율은 계약 상대자의 납품이행완료 총 건수 대비 납품기한을 지체하여 납품이행을 완료한 총 건수의 비율로 평가
- 납품이행완료라 함은 '물품납품및영수증'이 접수 처리되어 종결된 상태를 의미
- 일부 업체는 납품지체가 발생했음에도 '물품납품및영수증'을 접수하지 않아 평가에 미반영 ⇨ 제도 악용 우려

개정 내용

- 납기지체율 평가 시 업체의 평가 악용방지를 위해 수요기관이 발행한 '물품납품및영수증'을 **14일 이내 미접수 시 접수한 것으로 간주**

09) 신규 수요물자 MAS 계약 추진 불가 사유 신설 ('26.1.5.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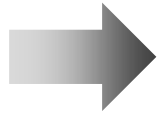
업체와 분쟁예방을 위해 신규수요물자에 대해 MAS계약을 추진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 신설

제4조(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추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 및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수요물자 특성상 규격 등이 다양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독과점 또는 담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요물자 특성상 업체 난립 등으로 가격 및 품질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요물자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이 달라져 계약규격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수요물자 설치 시 공사업면허가 필요한 경우로 설치비 비중을 고려할 때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설치비 없이 물품의 본체로만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수요물자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물자로 제품규격 및 시험기준 등을 고려할 때 안전관련 품질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MAS 부적합물품 퇴출, 타 계약방법 전환 등 관련 규정 신설 (26.1.5.시행)



MAS 계약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MAS 부적합물품 등에 대한 즉시 퇴출 기준 신설**

제6조(구매입찰공고) ① ~ ③ (생략)

④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된 수요물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구매입찰공고를 즉시 취소 또는 구매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매입찰공고 종료 후 차기구매입찰공고를 하지 않기로 심의할 수 있다.

1. ~ 4. (생략)

5. 담합이 발생한 경우

6. 조달사업법 제21조에 따른 불공정조달행위를 위반한 경우

7. 언론·국회·감사원 등으로부터 가격부풀리기나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지적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8.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한 구매입찰공고 후 최근 1년 이내 계약체결실적이 없는 등 해당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9. 특정업체의 독과점 등으로 해당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수요물자 설치 시 공사업면허가 필요한 경우로 설치비 비중을 고려할 때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설치비 없이 물품의 본체로만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MAS 계약 시 가격자료 제출서류 현행화(26.1.5.시행)

개정 이유

- MAS 협상기준가격 작성 등을 위해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전자 세금계산서로 협상기준 가격 작성이 곤란한 경우
- MAS규정 제16조 단서조항에 따라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 표, 규격별 거래내역, 기타 가격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음
- MAS 계약 시 관행적으로 계약담당자 대부분 규격별 단가가 격 비교표를 제출 받고 있음

개정 내용

- MAS 협상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협상기준가격결정 시 참고 하기 위해 대부분 계약담당자가 제출받고 있는 '규격별(유사 또는 동일) 단가 가격비교표'를 제출서류에 추가

12) MAS 계약이행실적 평가 전면 개선 ('27년 시행예정)

(현황) 다수공급자계약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관리 등을 위해 계약이행실적을 평가제도 운영 중('14~)

(문제점) MAS 계약이행실적 평가 실효성 저하 및 일관성 결여로 감사원 지적('25)이 있었고,
업체로부터 평가 관련 형평성 문제 지속적 제기

☞ 계약이행실적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미흡' 업체에 대한 **차기계약 배제기준 및 배제 범위 개선 필요**

1 계약이행실적평가 평가단위 및 배제기준 개선

(개선1) 계약이행실적평가 평가단위 및 배제조치 대상을 '계약상대자'에서 '**세부품명**'으로 변경

(개선2)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미흡'업체에 대한 차기계약 배제기준 개선

- (당초) 계약종료일 기준 직전 2회 연속 계약이행실적평가 미흡업체: 1년 배제
- (변경) 계약종료일 기준 **이전 계약이행실적평가 6회 이내 기준**으로 '미흡' 등급 누적횟수에 따라 **배제기간 차등 적용**

미흡 횟수	1회	2회	3회 이상	비고
배제기간	3개월	6개월	1년	

12) MAS 계약이행실적 평가 전면 개선

2 납기 평가항목 개선

(개선1) MAS세부품명 기준 계약 불이행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납기평가항목에서 '0점'으로 평가

(개선2) 평균납기지체일수의 평가지표를 납품기한 초과 건의 지체일수의 합으로 변경하되, 평가구간 완화

개정 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내용	단위	지표배 점
납기 (25점)	납기 준수율	(납품기한 내에 납품 완료한 건수/전체 납품 건수) × 100	%	13
	평균 납기 지체일수	납품기한을 초과하여 지체된 건의 지체 일수의 합/전체 납품 지체건수	일	12

개정 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내용	단위	지표배 점
납기 (25점)	납기 준수율	(납품기한 내에 납품 완료한 건수/전체 납품 건수) × 100	%	13
	납기지체일수	납품기한을 초과하여 지체된 건의 지체 일수의 합	일	12

< 평가구간 >

< 00일 이내~ 00일 초과 >

점수	12	11	10	9	8	7	6	5	4	3	2	1	0
당초	1일 이내	1일~ 3일	3일~ 5일	5일~ 7일	7일~ 9일	9일~ 11일	11일~ 13일	13일~ 15일	15일~ 17일	17일~ 20일	20일~ 25일	25일~ 30일	30일 초과
변경	5일 이내	5일~ 10일	10일~ 15일	15일~ 20일	20일~ 25일	25일~ 30일	30일~ 35일	35일~ 40일	40일~ 45일	45일~ 50일	50일~ 55일	55일~ 60일	60일 초과

12) 계약이행실적평가 항목 중 납품품목비율 평가산식 변경

* 이미 운영중인 사항 규정에 반영

3 품질 평가항목 개선

'품질 만족도' 평가지표는 '수요기관 만족도' 평가항목으로 조정하고, 서비스 평가항목에 평가지표로 반영중인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처리기간'을 '품질' 평가항목으로 조정

개정 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내용	단위	지표배 점
품질 (21점)	조달 품질 신문고 하자 처리 건수	해당 업체에 대한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조치 요구 후 처리 건수 (조치완결된 건 기준)	건	9
	품질 만족도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한 품질 만족도	점	12

개정 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내용	단위	지표배 점
품질 (17점)	조달 품질 신문고 하자처리 건수	해당 업체에 대한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조치 요구 후 처리건수(조치완결된 건 기준)	건	9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처리기간	수요기관의 하자조치 요구 후 경과일수의 합/해당업체의 하자처리 건수(조치완결된 건 기준))	일	8
	품질 만족도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한 품질 만족도	점	12

12) MAS 계약이행실적 평가 전면 개선

4 만족도 평가항목 개선

(개선) 평가왜곡 방지 등을 위해 일부 만족도 항목 폐지 및 평가시기를 조정하고 배점 및 지표도 조정

- (평가시기 완화) 당초: 검사 시 평가 → 변경: 검수, 종결 시에도 평가 가능
- (배점조정) 품질, 가격, 서비스 만족도 배점 하향(12점→ 10점, 6점→5점)
- (기본점수 상향) 기본점수 배점의 80%로 조정(품질:8점, 가격, 서비스: 4점)
- 사후만족도 항목 폐지

개정 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내용	단위	지표배점
수요기관만족도 (18점)	가격 만족도	검사 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한 가격 만족도	점	6
	서비스 만족도	검사 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한 서비스 만족도	점	6
	사후 만족도	납품 후 90일이 지난 시점 이후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한 사후 만족도	점	6

개정 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내용	단위	지표배점
수요기관만족도 (20점)	가격 만족도	검사 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한 가격 만족도	점	5
	서비스 만족도	검사 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한 서비스 만족도	점	5
	사후 만족도	납품 후 90일이 지난 시점 이후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한 사후 만족도	점	6
	품질 만족도	검사 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한 품질 만족도	점	10

12) MAS 계약이행실적 평가 전면 개선

5 서비스 평가항목 개선

(개선) MAS 가격관리 강화 등을 위해 **우대가격위반 지표**를 신설

- 우대가격위반 지표 평가 시 **거래정지처분 횟수 또는 위반금액을 고려하여 평가** → **횟수, 금액 평가 중 낮은 점수 적용**

처분횟수	거래정지기간	배점
위반없음	-	10
1차 적발	1월	6
2차 적발	3월	3
3차 적발	6월	0

or

환수결정금액	배점
위반 없음	10
1천만원 미만	6
1천만원 이상~5억원 미만	3
5억원 이상	0

개정 전

개정 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내용	단위	지표 배점
서비스 (18점)	납품 품목비율	(해당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납품한 품목 수/ 해당업체가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품목 수)×100	%	8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처리기간	수요기관의 하자조치 요구 후 경과일수의 합/해당업체의 하자처리건수(조치완결된 건 기준)	일	10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내용	단위	지표 배점
계약관리 (18점)	납품 품목비율	(해당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납품한 품목 수/ 해당업체가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품목 수)×100	%	8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처리기간	수요기관의 하자조치 요구 후 경과일수의 합/해당업체의 하자처리건수(조치완결된 건 기준)	일	10
	우대가격위반	우대가격위반 적발 횟수 또는 환수금액	횟수 또는 금액	10

12) MAS 계약이행실적 평가 전면 개선

6 계약이행성실도 평가항목 개선

(개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평가지표를 위반사유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화 하여 평가

- 위반사유가 중대한 담합, 뇌물, 허위서류제출, 안전사고 위반, 계약의 이행의 부실 조잡인 경우 제재기간에 따른 평가 강화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단위	항목 배점	지표 배점	세부평가방법		비고
					일반사유(현행)	중대사유(뇌물/담합 등)	
계약 이행 성실도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일	20	10	0점 : 해당없음	0점 : 해당없음	
					-1점 : 30일 이하	-1점 : 30일 이하	
					-2점 : 30일 초과 ~ 60일 이하	-2점 : 30일 초과 ~ 40일 이하	
					-3점 : 60일 초과 ~ 90일 이하	-3점 : 40일 초과 ~ 60일 이하	
					-4점 : 90일 초과 ~ 120일 이하	-4점 : 60일 초과 ~ 80일 이하	
					-5점 : 120일 초과 ~ 150일 이하	-5점 : 80일 초과 ~ 100일 이하	
					-6점 : 150일 초과 ~ 180일 이하	-6점 : 100일 초과 ~ 120일 이하	
					-7점 : 180일 초과 ~ 210일 이하	-7점 : 120일 초과 ~ 140일 이하	
					-8점 : 210일 초과 ~ 240일 이하	-8점 : 140일 초과 ~ 160일 이하	
					-9점 : 240일 초과 ~ 270일 이하	-9점 : 160일 초과 ~ 180일 이하	
					-10점 : 270일 초과	-10점 : 180일 초과	

05. 개정 내용

기타 규정 보완

- 01) MAS 2단계경쟁 '고용안정우수' 평가 기준 보완
- 02) MAS 2단계경쟁 '사후관리' 평가 기준 보완
- 03) MAS [별지 4호 서식] 규격서 작성 기재요령 보완

1) MAS 2단계경쟁 '고용안정우수' 평가기준 보완 ('26.7.1 시행)

개정 이유

- MAS 2단계경쟁 고용안정우수기업 평가 시 기업의 전체고용 인원대비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인원 비율이 기업구분별로 10%~30%인 경우 가점 1점 부여 '25.6.개정, '26.1.1.시행예정
- 기업이 고용안정우수기업 가점 획득을 위해 구조조정, 해고 등을 통해 전체고용인원수를 조정하는 부작용 발생 우려

개정 내용

고용안정우수기업 평가 시 전체고용인원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

-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

* 청년고용증가율 평가 시 전체고용인원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 중

2) MAS 2단계경쟁 '사후관리' 평가기준 보완 ('27년 이후 시행예정)

개정 이유

- MAS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에서 선택평가항목으로 '사후관리' 는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 등급(미흡-보통-우수-최우수)에 따라 평점 부여
- 계약이행실적 평가대상이 계약상대자에서 세부품명별로 변경
→ 사후관리평가도 세부품명(현재: 계약상대자)별 평가로 변경 필요

개정 내용

- 사후관리 평가 시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세부품명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 평균 평점을 적용

$$\text{가중평균 평점} = \left(\frac{\sum \text{세부품명별 제안금액}}{\text{제안 총금액}} \times \text{세부품명별 평점} \right)$$

3) MAS [별지 제4호 서식] 세부품명 규격서 양식 기재요령 보완 ('26.1.5. 시행)

04. 개정 내용
기타규정보완

개정 이유

- 현행 MAS 규정 [별지 4호 서식] 세부품명 규격서 양식상 **부품(재료)의 원산지 및 주재료 공급자는 필요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상 **원산지 표시 특례제품(186개)의 부품(재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업체는 규격서상 문구로 인해 **모든 MAS 물품의 부품 원산지 표시 및 주재료 공급자는 자율적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오인**

개정 내용

-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상 **원산지 표시 특례제품의 부품에 대해서는 규격서에 원산지 및 주재료공급자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기재요령' 신설**

06. (‘25.6.) MAS개정사항

- 01) 차기계약 배제 기준 완화
- 02) 제품 단종 시 신제품 변경 납품 허용
- 03) 약자기업 MAS 진입요건 완화
- 04) 2단계경쟁 사전판정 이의제기절차 신설
- 05) 설치비 다량납품요구 할인율 개선
- 06) 시험성적서 제출 편의 개선
- 07) 2단계경쟁 평가 신인도 평가 개선
- 08) 2단계경쟁 수출기업 지원 대상 평가 개선
- 09)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2단계경쟁 예외 신설
- 10) 무상물품 제공행위 금지 명확화

1) 차기계약배제 기준 유연화(‘25.6.16.시행)

개정 이유

-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 중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종결된 납품 실적이 없는 경우 차기계약(또는 재계약) 배제
- 차기계약배제는 물품 종결여부로 판단함에 따라 계약종료일 기준 납품요구가 있으나 종결을 하지 못한 물품이 추후 납품을 하더라도 차기계약에서 배제(3년간)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개정 내용

- 배제기준은 종결로 유지하되, 납품요구를 받았으나 미종결된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차기계약(또는 재계약) 허용
- 다만 차기계약체결 후 해당 미종결 납품요구건을 취소하는 등 제도 악용 우려가 있어 납품요구건 종결 시 차기계약 허용

2) 제품 단종 시 신제품으로 변경 납품 허용 (‘25.6.16.시행)

개정 이유

- 다수공급자계약 제품 납품 시 규격변경은 계약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현장특성, 안전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
- 납품요구물품 중 수요기관의 지속적인 납품기한연장 시 납품 기한 연장이후 해당제품이 단종 된 경우,
 - 업체는 기존제품 납품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규격 변경을 통해 동등이상의 신제품을 납품할 수 없어 기업에 피해발생
 - 수요기관은 제품 단종으로 해당업체가 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 납품업자를 재 선정해야 함
→ 수요기관 사업차질 발생 우려

개정 내용

-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납품요구건에 대해 납품연장 이후 제품이 단종된 경우 동등이상의 신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규격변경 허용
 - 수요목적달성을 위해 계약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변경규격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허용

3) 약자기업 MAS 진입요건 완화(‘26.1.1.시행)

개정 이유

-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 시 초기창업, 소기업 등은 납품실적 평가 등에서 불리하여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있음
 - 기업간담회 시 초기창업기업, 소규모 기업 등은 MAS시장 진입이 어려워 진입요건을 완화 해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음

개정 내용

- 약자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현 **납품실적 평가**를 ①**중기업 또는 대기업**, ②**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 **납품실적 건수에 따른 평가 시 중기업 또는 대기업보다 유리하게 평가**

(단위 : 점)

기업구분	세부심사항목	심사지표	평점	심사기준
중기업 또는 대기업	납품실적 수준	납품실적 (구매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	20	10건 이상
			17.5	6건 이상~10건 미만
			15	3건 이상~6건 미만
			0	3건 미만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납품실적 수준	납품실적 (구매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	20	6건 이상
			17.5	3건 이상~6건 미만
			15	1건 이상 ~ 3건 미만
			0	1건 미만

4) 2단계 제안공고 시 사전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신설(’26.1.1.시행)

개정 이유

- 수요기관 사전판정 시 기관 실수로 규격 적합자를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
- 사전판정 오류를 납품요구 이후에 인지 시 최종납품업체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재평가 가능하여 분쟁발생

개정 내용

-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서 수요기관 **사전판정 시 3일간** 기업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
- 기업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수요기관은 **3일내에 이를 검토 후 통보**하고 **필요 시 재평가(사전판정) 실시**

5) 설치비에 대한 다량납품요구 할인을 개선('26.7.1.시행)

개정 이유

- 다량납품요구할인을 적용 시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 체결된 설치비는 2단계 경쟁여부에 따라 할인이 다르게 적용

구분	다량납품할인율 적용 여부	
	본품	설치비(추가선택)
2단계 경쟁(×)	○	○
2단계 경쟁(○)	○	×

- 설치비는 주로 인건비로 물품과 달리 다량납품에 따른 비용 절감효과가 없음에도 할인이 적용 되는 것은 다량납품요구할인을 적용 취지와 맞지 않음

개정 내용

- 기업부담 경감 및 다량납품요구할인율 제도 취지 등을 고려 다량납품요구할인율 적용시 **설치비**는 제외

※ 당초 '26.1.1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스템 개선 지연으로 '26.7.1.로 시행시기 조정

6)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편의 개선(‘25.6.16.시행)

개정 이유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시 시험성적서는 최근 1년 이내 원부분 및 재발급 서류 제출만 허용
- 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이 최근 1년 이내로 인정기간이 계약기간 보다 짧고 또한, QR코드 등으로 시험성적서 진본 확인이 가능함에도 원본 제출로 한정하여 기업의 비용부담 발생

개정 내용

- 기업부담경감을 위해 시험성적서 인정기간 확대 및 시험성적서 사본제출 허용
 - 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되**, 제품특성, 품질 문제 발생여부, 국민안전 및 생명에 관한 물자여부 등은 1년으로 유지
 - **시험기관별 QR 코드 등으로 시험성적서 진위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본제출 허용

7) 2단계경쟁 평가 시 신인도 항목 개편(‘26.1.1.시행)

- (기술 품질 평가) 고도, 일반기술 평점을 **0.5점 상향조정**(1.0→1.5, 0.5→1.0)하고, 고도기술에 **혁신제품인증** 추가, 탄소중립정책 지원을 위해 일반기술에 **저탄소제품** 인증 신설
- (저출생 대응 지표 신설) 저출생 대응 정책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1.0)**, **일. 생활균형우수기업(1.0)** 신설
- (고용정책지원) 장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를 위해 **‘고용안정우수기업’** 평가 신설

평가지표	기업구분	고용안정우수	가점
고용우수기업	대기업	30% 이상	+1.0
	중기업	20% 이상	+1.0
	소기업	15% 이상	+1.0

- (신인도 항목폐지) 기업이 불필요한 인증을 취득하지 않도록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폐지**
정규직 전환기업도 폐지 대상이었으나 **‘25.12. 개정 시 폐지대상에서 제외**

8) 2단계경쟁 수출기업 지원 대상 평가기준 개선(‘26.1.1.시행)

개정 이유

-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및 표준평가방식의 선택평가항목 중 수출 중소기업(수출실적10만 USD이상) 또는 G-PASS 기업(B등급 이상)인 경우 가점(배점의 100%)이 부여
- 수출실적 및 G-PASS 등급과 무관하게 동일한 가점 부여
→ 평가지표 실효성 저하 및 기업의 수출증진 유인 부족

개정 내용

-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평가기준을 세분화 하여 수출기업 가점 차등적용 → 수출실적별(500만 USD, 10만 USD)*, G-PASS기업은 등급별(A등급, B등급)로 차등 적용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수출 중소기업(3년간 500만USD 이상) G-PASS기업(A등급)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수출 중소기업(3년간 10만USD 이상) G-PASS기업(B등급)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0.8
	해당없음	배점 × 0.4

9)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긴급조달 (‘25.6.16.시행)

개정 이유

-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 폭우, 한파, 폭설 등으로 재난에 대응하는 긴급물자 구매 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절차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곤란

개정 내용

-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 폭우, 한파, 폭설 등 재난에 대응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조달물자에 대해 MAS 2단계경쟁 예외를 허용하여 긴급 조달 지원체계 구축

제50조(2단계경쟁 예외) ① 조달청장은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 또는 이상기후(폭염, 폭우, 한파, 폭설 등) 발생 시 필요한 물자를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

10) 무상물품 제공행위 금지 명확화(25.6.16.시행)

개정 이유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납품요구시 본계약의 조건외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규정
 - 수요기관도 계약상대자에 본 계약 조건외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는 수요기관 영업 등을 위해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는 물품 등을 추가 납품

개정 내용

-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물품,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납품하지 못하도록 문구를 명확히 규정하고,
 - 아울러 수요기관도 계약상대자에게 물품 서비스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

Thank You

Q & A